

외국인바이어 초청절차 간소화 우대기업 모집 공고

외국인바이어 사증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용이하게 외국인바이어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지원하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·공고합니다.

1. 사업목적

- 국가 경제기여도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등 외국인 초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

2. 신청자격 요건

- 초청 외국인 단기상용(C-2) 사증발급 간소화 대상기업의 경우, 최소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
 - 신청일 기준, 최근 1년 간 '단기상용(C-2)' 외국인을 2회 이상 초청하였거나, 초청인원이 10명 이상일 것(입국자 수 기준)
 - * 초청인원 산정시 無사증 초청인원은 제외(미국, EU 등)
 - 과장급 또는 재직 경력 5년 이상의 '초청 전임자'를 둘 것
 -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간 해당 기업, 대표자 및 '초청 전임자'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없을 것
 - * 단,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(위반사실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통고처분을 받고 기한 내 납부한 경우)에는 2회 이상 위반사실이 없을 것
 - 전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년간 평균 수출실적이 100만불(US \$) 이상일 것(단, 수출을 시작한 이후의 실적만 평가)
 - 신청일 기준 현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을 것(국세·지방세 포함)

- 상기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
- 평가 시 가점 사항
 - 최근 3년간 해외투자 또는 국내투자유치 실적 100만불이상 : 2점
 - 벤처·여성·장애인·사회적 기업 : 각 2점
 - 최근 3년이내 정부포상 수상 실적(최고 1건만 인정)
 - * 훈·포장 5점, 대통령 4점, 국무총리 3점, 장관 2점, 청장(차관급) 1점

3. 우대방안

- 초청자 관련 서류(제출서류) 대폭 간소화
 - 공관별로 정하고 있는 바와 상관없이 '우대기업'에서 발행한 초청장 1종으로 간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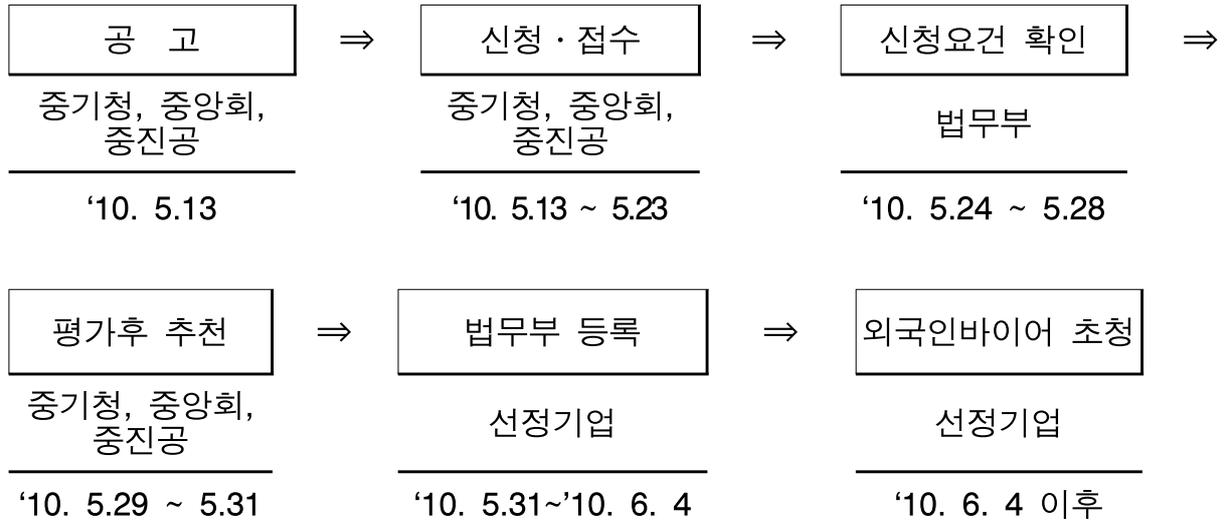
4. 신청접수 기간 : '10. 5. 13(목) ~ '10. 5.23(일) 까지

5. 신청서류 : 신청서식 별첨

6. 신청요령

- 중진공 홈페이지(www.sbc.or.kr)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은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
- 신청·접수 문의처
 -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이한별 대리
 - * E-mail : star@sbc.or.kr, TEL : 02-769-6724, FAX : 02-769-6928/6720
 -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정선경 사원
 - * E-mail : skjung@sbc.or.kr, TEL : 02-769-6726, FAX : 02-769-6928/6720

7. 추진절차



.....

1차 기업 선정 시, 과거 외국인 초청실적 등에 따라 최종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등록 후 초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 발생 등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

.....

【 붙임 】

우대기업 등록절차 및 제재조치 등

□ 등록 신청

- (신청방법) 등록대상 기업은 신청기간 내 '휴넷 코리아(www.visa.go.kr)'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업회원 및 우대기업 등록 신청
- (첨부서류) 온라인 신청 시 사본 첨부
 -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위임장
 - '전담 직원'으로 근무하(려)는 자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
 - 추천기관장(중소기업청장, 중소기업중앙회장, 한국무역협회장)이 발행한 추천서
 - '전담 직원'으로 근무하(려)는 자의 출입국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
 - ※ 단, 2010년도에 등록한 기업은 사후 보완
 - 우대기업 준수사항 이행 동의서(서식은 휴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
□ 우대기업 준수사항

- '전담 직원의 업무 전문성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해 등록(변경 등록 포함) 전 출입국관리 직무교육(교육계획은 별도 마련 예정)을 받도록 할 것
 - ※ 단, 2010년도에 등록한 기업은 2010.12.31.까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것
- 기업(단체)의 휴·폐업, 대표자 또는 '전담 직원' 변경 시, 15일 이내에 휴넷코리아(www.visa.go.kr)에서 기업회원 변경 등록할 것
 - ※ 단, 대표자 또는 '전담 직원' 변경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까지 변경 등록할 것
- 초청 외국인의 소재 불명(연락두절, 숙소이탈 등) 시,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고할 것

□ 등록취소 · 재등록 제한

- 우대기업(대표자, 전담직원)에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등록 취소
 - 불법입국, 불법취업 등을 위해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였거나, 불법고용 등 「출입국관리법」을 위반한 경우
 - ※ 단,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와 과태료를 부과받고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2회 위반한 경우
 - 최근 1년 내 초청 외국인(C2-2에 한함) 중 5% 이상 소재불명·불법체류 중인 경우
 - ※ 단, 초청인원이 20명 미만인 기업은 2명 이상인 경우
 - 우대기업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
- 취소사유가 발생한 기업 중, 기업의 소명 내용, 소재불명 발생·「출입국관리법」 위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 등록 취소를 면제할 수 있음
- 등록취소 기업은 취소일로부터 2년 간 재등록 제한

□ 우대기업 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

- (대상자) 계약, 기계설치, 상담, 시장조사, 공장견학 등의 목적으로 '우대기업'의 초청에 의해 '단기상용(C-2)'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
 - ※ 동 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영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바이어 등의 초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므로, 모기업 등에서 해외지사, 해외투자법인 등의 직원을 교육·연수 등의 목적으로 초청(즉, 사회통념 상 기업 내부자에 대한 초청)하는 경우는 제외

- (신청인 및 신청장소) 대상자(외국인 바이어 등)를 대리하여 우대기업 대표자 또는 '전담직원'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(또는 출장소)에 신청
- (제출서류) 사증발급인정신청서, 여권 사본, 재직증명서, 초청장
 - ※ 별도 초청장 양식은 없으나 대표자 서명, 대상자의 인적사항, 입국 목적, 숙소, 주요 일정 및 '전담직원'의 연락처는 반드시 포함할 것
- (발급내용) 체류자격 : '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(C-2-2)', 체류기간 30일, 사증종류 : 단수